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16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 박상웅・신동욱・서일준

김성원 • 유용원 • 서천호

이인선 • 박덕흠 • 강승규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·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 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014호)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0조의3(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폐쇄하고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(이하 "공업지역"이라 한다)으로 이전한 후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
- 1.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 한 경우
- 2.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②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중 법인이 공업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 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, 감면 등의 적용기준과 제 2항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, 감 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0조의3(공장의 공업지역 이전
	에 따른 감면) ① 「국토의 계
	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
	6조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
	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
	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
	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
	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
	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
	1호에 따른 공업지역(이하 "공
	업지역"이라 한다)으로 이전한
	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
	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
	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
	까지 면제하고, 재산세의 경우
	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
	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
	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
	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	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
	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	1.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

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

- 2.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②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중 법인이 공업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, 감면 등의 적용기 준과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으 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의 범위, 감면 등의 적용기준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